

# 공동주택(아파트 등) 세대점검 안내문

1.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대상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소방시설법 개정(2022.12.1.)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(아파트 등) 세대점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계인께서는 세부사항을 확인하시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공동주택 세대점검 개정사항

(점검목적) 공동주택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· 관리

(점검대상) 공동주택의 아파트 등(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)

(점검시기) 시행일(2022. 12. 1.)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전세대 점검

※ 시행일 이후 완공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마다 전수점검

(점검자) 공동주택 세대주,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

(점검방법) 2년마다 1회이상 세대주, 관리자가 점검(세대점검표\* 활용)하거나

자체점검시 관리업자를(종합 30%, 작동 50%) 통해 점검

\*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공동주택 세대점검 동영상 시청

○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대상 중 수신기에서 원격점검으로

모든세대의 점검이 가능한 경우 해당점검으로 대체 가능

※ 선로단선인 세대 및 경계구역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 실시

○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2년간 자체보관

## 연 천 소방서장